



제 423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우주개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등〉

■ 서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733호)

2025. 3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전문위원 임 명 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등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서천호의원 등 10인

나. 발의연월일 : 2024. 12. 19.

다. 회부연월일 : 2024. 12. 2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우주개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자원 배분 등(안 제3조제 3항 및 제4항 신설)

가. 개정안의 내용

개정안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부의 책무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조(정부의 책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.</u> <u>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
나. 검토의견

우주항공 분야의 기술, 장비 및 시설은 경제적,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,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력, 자원, 산업 기반을 선점한 국가가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, 그 영향은 우주항공 분야를 넘어 국가의 경제와 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우리나라는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개청(2024.5.27.)하고,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우주항공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.

이처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·예산 등의 자원이 충분히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임.

참고로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2항¹⁾ 및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1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,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견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예산·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·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·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

제25조제2항2)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.

문 의 처

02)6788-5236

한다.
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.

1. 고용 증대, 수출 촉진,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
2. 규모 및 성장률, 연구개발 집약도,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
3.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

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2)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25조(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)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(이하 “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략산업등 분야의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·분석
3.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
4.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민·군기술협력사업
5.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기술개발사업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④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·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제42조에 따른 연대협력모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⑥ 정부는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·방법 및 절차와 출연금의 지급·사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